화석지 보존 · 관리 지침

제정 2007. 12. 24.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0호 폐지 2009. 8. 28.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. 8. 28. 문화재청 훈령 제170호 개정 2009. 12. 14.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1. 4. 1.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재발령 2014. 3. 11. 문화재청 훈령 제315호

제1장 총 칙

1. 지침의 목적

이 지침은 「문화재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.) 제2조제1항제3호다 목에 정의한 기념물, 제25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, 제 70조 제1항에 의거 시·도지사가 지정한 시·도지정문화재,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매장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정의한 매 장문화재 중 화석 및 화석지에 대한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관련규정

- 법 제2조, 제25조, 제35조, 제36조, 제37조, 제39조, 제40조, 제42조 내지 제48조, 제70조, 제74조
- ㅇ 법 시행령 제21조, 제22조
- ㅇ 법 시행규칙 제14조, 제16조, 제20조, 제26조, 제27조, 제28조, 제31조
- ㅇ 매장법 제11조, 제20조, 제27조
- ㅇ 매장법 시행령 제11조
- ㅇ 매장법 시행규칙 제14조
- ㅇ 행정지침
 -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고시)
 -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고시)

- 발견·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고시)

3. 용어 정의

- o 화석 : 암석이나 지층 속에 보존된 지질 시대의 동식물의 유해(遺 骸) 및 유적 또는 당시 환경의 흔적 등
- o 화석지 : 화석의 산출지 또는 그 분포지

4. 화석 및 화석지의 범위와 그 분류

이 지침에서 화석 및 화석지의 범위와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

가. 지정문화재

- o 국가지정문화재 : 법 제25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 정한 화석 또는 화석지
- 시도지정문화재 : 법 제70조에 의거 시·도지사가 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및 화석지
- 문화재자료 : 국가·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시·도지사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화석 및 화석지

나. 비지정문화재

-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화석지로서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화석의 분포지와 기타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·학술· 과학·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
-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·학술·과 학·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일반 동산 화석(법 시행규칙 제42조, 별표 2)
-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문화재적 가치가 미흡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는 비 문화재 화석 또는 화석지

5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석 및 화석지와 이를 보관 또는 보존·관리하는 소유자, 관리단체, 지방자치단체(시·도 또는 시·군·구), 연구·조사기관,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·관리관청과 그 위임 또는 위탁 기관 등에게 적용한다.

제2장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· 관리

- 1. 문화재 지정 시 조치사항(관리단체)
 - 가. 법 제11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내용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사항 통지(관계기관에는 공문 발송)
 - 나. 국가지정문화재대장 등의 작성 · 보존.
 - 다. 문화재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(문화재안내판, 경고판 등) 설치 등 제반 보호 조치.
 - 라. 기타 화석지 보존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, 당해의 화석지의 보존 및 훼손방지 보호시설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존·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(화석지 원형유지 기본원칙)

2. 화석지의 수시점검 및 조치

- 가. 관리단체는 인위적 및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화석지 및 그 주변이 훼손 또는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.
 - 화석지의 균열상태,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출상태, 식생에 의한 노두의 훼손상태, 보호각 내의 습도 등
 - ㅇ 화석지의 시설물(관람로, 조명, 전기시설 등) 상태
 - o 화석지의 풍화 및 침식, 화석지 주변 시설물의 파손 또는 붕괴, 화석지내 및 주변의 쓰레기에 의한 훼손 등
 - o 기타 안내판, 경고판 등 보호·홍보시설
- 나. 관리단체는 수시점검 결과 화석지의 훼손 또는 오염(예상)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함.
- 다. 화석지의 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화석지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때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, 현상을 변경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화재청에 허가신청.

3. 화석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

가. 화석지의 보존 ·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단체는

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화석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.

- 화석지 내 및 주변 환경 : 보호각 내 비효율적인 조명 및 습도 등의 변화, 화석지 위에 자라난 식생, 우기 시 지표수 흐름 및 지하수 유 출 등
- o 화석지 보존상태 : 화석지의 풍화에 의한 훼손, 파랑의 침식에 의한 화석의 훼손, 고착성 생물(따개비, 굴 등)에 의한 훼손, 시설물 등에 의한 훼손, 균열에 의한 훼손
- 나. 화석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는 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문 화재청장에게 제출

4. 화석지의 공개제한

가. 공개제한

- 화석지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제한
- 공개가 제한되는 화석지 주변에 대하여 관리단체는 공개를 제한하는는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
 -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·지정번호·명칭 및 소재지
 -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
 -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
 - 공개제한 위반시의 제재내용
- o 국가 및 당해 관리단체는 화석지 보존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 가능

나. 출입의 허가

- o 화석지 보존·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.
 - 문화재의 수리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문화재의 보호·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·활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다. 출입허가 신청절차

- :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→ 시장・군수・구청장 →
 시・도지사 및 문화재청장
- 청부서류 :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5. 현상변경 행위

- 가. 현상변경 행위 기준
 -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(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)
 - → 현상변경허가 절차 이행
 - o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주 변에서의 행위(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)
 - →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문화재보존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과반 수가 영향있음으로 판단 시 현상변경허가 절차 이행(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)
- 나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
 - 관리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

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

- 1.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
 - 가.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·증설하는 행위
 - 나.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
 - 다.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 상의 굴착행위
 - 라.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·임야 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
- 다.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

o 마련된 화석지에 대해서는 그 허용기준을 적용하고,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화석지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행위 처리절차 에 따라 처리.

라. 현상변경 행위 처리절차

현상변경 절차	주요 업무내용							
허가 신청	o 시·군·구 및 시·도를 거쳐 현상변경허가 신청 서류 접수							
신청서류 검토	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에 대한 관계전문가 검토(필요 시 현지조사) 기존 처리현황 검토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및 주변현황 검토 							
문화재위원회 심의	o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청 안건에 대한 종합심의							
결과통보	o 허가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- 허가 · 불허가, 보완 등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							
착수·완료 신고	○ 현상변경 허가행위에 대한 착수·완료신고 - 결과통지 후 착수·완료 신고서를 허가기간 내에 이행 -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 취소							

※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의 처리절차와 같다.

마. 레플리카(replica) 제작 및 활용

- ㅇ 현상변경허가 신청
 - 화석의 레플리카 제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레플리카 제작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.
 - 레플리카 모형 제작을 위한 현상변경허가는 동 계획이 마련되었을 경우 한함
- ㅇ 제작 및 활용의 기본사항
 - 화석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산발적인 레플리카 제작 불허
 - 제작된 레플리카가 있는 경우, 향후 필요한 수량은 제작된 모형 이용
 - 제작된 모형의 변형 방지 및 영구 활용을 위한 보존시설 방안 마련

o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레플리카 제작 현상변경허가 불허

6. 화석지의 활용

- 가. 화석지 활용을 위한 사업은 원형유지 기본원칙에 따라 활용계획서를 작성 작성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.
- 나. 화석지에서의 사업시행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 단체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실시.

제3장 시·도지정문화재의 보존·관리

- 1. 시·도지정문화재 화석지의 보존·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·도 조례에 의하되, 다음 사항은 법 제74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관계규정을 준용.
 - 가. 법 제7조에 의한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
 - 나. 법 제10조에 의한 기록의 작성 · 보존
 - 다. 법 제27조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
 - 라. 법 제31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지정의 해제
 - 마. 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
 - 바. 법 제35조에 의한 허가사항
 - 사. 법 제42조에 의한 행정명령
 - 아. 법 제40조에 의한 신고사항
 - 자. 법 제45조에 의한 직권에 의한 조사
 - 차. 법 제48조에 의한 공개
- 2. 위의 준용규정의 경우 "문화재청장"은 "시·도지사"로, "대통령령"은 "시·도조례"로, "국가"는 "지방자치단체"로 본다.
- 3. 시·도지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...
 - 가. 화석지를 시·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.
 - 나. 시 · 도지정문화재 화석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.
 - 다. 문화재청은 위의 가, 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

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4장 매장문화재의 보존·관리

1. 발견신고

- 가. 화석지(화석 포함) 등 자연사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그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.
- 나.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발견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 첨부.
- 다. 공사 중에 발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긴급히 현장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치.

2. 발굴허가

가. 발굴허가 대상

- 매장법 제11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 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.
 -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(학술발굴)
 -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(구제발굴)
 - 멸실·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(구제발굴)

나. 발굴허가의 신청절차

- 매장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목적으로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장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
- o 발굴허가 신청 시 관할 자치단체의 검토의견 첨부

다. 발굴기관의 선정 및 조사단 구성요건

o 매장법 시행규칙 별표 4(조사기관의 등록기준)에 의한 대상기관, 인력기준, 시설기준 및 기자재 등을 갖춘 기관

라. 발굴허가 검토사항

ㅇ 구비서류 검토

- ㅇ 발굴대상지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
- ㅇ 발굴기관의 조사 수행상의 적정성 여부
 - 조사인력, 조사기간, 조사비(발굴비용), 조사범위(구역)의 적정성 등
 -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부합여부 등

마. 학술발굴조사 사업

- 학술발굴조사 계약체결 시 발굴허가 규정에 준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시사항 및 조건 등을 명시.
 - 발굴조사보고서 제출, 발굴된 화석표본에 대한 분류평가 실시 및 국가귀속 절차 이행(대상문화재 보관증 및 화석표본 목록), 발굴조사 완료시 문화재청 및 당해 지자체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등 법적 의무사항
 - 불이행시 제재사항 및 기타 필요한 지시·조건 등

바. 발굴기관 이행사항

- o 지도위원회·현장설명회 개최.
- ㅇ 발굴조사 완료시
 - 20일 이내에 발굴조사 완료신고서, 약보고서(발굴 문화재 목록 및 사진자료 포함), 발굴결과 및 보존에 대한 발굴기관의 의견서 제출
 -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 제출
- ㅇ 발굴 문화재(화석표본 등)의 신고 국가귀속 절차 이행.
 -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분류평가(국가귀속 여부 검토) 실시
 - ⇒ 분류평가회의는 지도위원 중심으로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
 - '발굴 매장문화재(임시) 보관증'[별지 제1호 서식]과 함께 '화석표본 목록'(표본번호, 명칭, 학명, 수량, 규격, 연대, 특징, 발굴 연월일, 발굴장소, 발굴자, 발굴경위, 보관장소, 보존처리 현황, 표본 별 사진 등)[별지 제2호 서식] 및 보관·관리관청 지정 의견 작성 제출
 - ※ 화석표본 등의 과다로 장기간 소요되거나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시 일괄 조치
 - ※ 발견신고 시에도 위와 같은 '화석표본 목록'을 작성하여 첨부하

며, 당해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주관으로 학술적 가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(3인)의 검토를 받아 처리

3. 지표조사

가. 지표조사기관

- o 매장법 시행규칙 별표 4(조사기관의 등록기준)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
 - 육상지표조사기관 중 지질(자연사) 분야 조건부 지정(관보 고시)
 -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는 타 지정기관과 합동조사만 가능
- ㅇ 지표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 시행 시 지도사항
 - 고고사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지질 (고생물) 등 자연문화재 분야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관련학과 전공자나 위 조건부 지정기관이 반드시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 - 다만, 지질(고생물) 분야만의 지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건부 지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

나. 지표조사의 비용

비용의 산출은 매장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
 는 "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 기준"에 의한다.

다.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

-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사업예정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통보
- 보존대책을 통보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이행토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 확 인
- ㅇ 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보존조치 이행사항
 - 원형 또는 현상보존, 이전복원, 발굴조사, 공사 중 문화재 발견신고 등
- 4. 발견신고 및 발굴조사·지표조사에 따른 검토조치 가. 화석지의 문화재 지정 추진

- o 관계전문가 현지 지정조사 등을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또는 시·도기념물 지정권고
- 나. 화석표본 등 국가귀속 조치
 - 분류평가(발굴·지표조사 시) 또는 관계전문가 검토(발견신고 시)를 거쳐 매장법 제20조에 의거 화석·광물·암석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 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국가귀속
- 다.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처리
 - o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분류되지 아니한 표본 등은 이를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케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토록 할 수 있다.
- 라.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·관리 보관·관리관청의 지정
 - o 보관·관리관청 지정 대상기관
 -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, 한국전통문화학교, 국립고궁박 물관, 국립해양유물전시관, 국립중앙박물관, 당해 시·도
 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의한 학교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·연구기관,「과학관육성법」에 의한 과학관
 - o 보관·관리관청의 위임 또는 위탁 가능기관
 -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속기관, 국립민속박물 관, 국립·공립·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
 - 당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
 - o 보관·관리관청의 선량한 관리
 - 보관·관리관청이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·위탁하여 보 관·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한 문화재 보존시 설의 적합여부와 문화재의 활용도 검토
 - 국가귀속 문화재대장 비치 및 당해 문화재의 보관·전시 및 활용
 - 연도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·관리현황 제출(익년도 1월말까지)

제5장 기 타

1. 유효기간

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<2009. 8. 28.>

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9. 8. 28.>

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9.12.14.>

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1. 4. 1.>

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4. 3.11.>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훈령의 폐지) 기존의 화석지 보존·관리 지침(문화재청 훈령 제 228호, 2011. 4. 1)는 이를 폐지한다.

발굴 매장문화재 (임시)보관증

발굴 매장문화재 (임시)보관증										
① 산 출	들지 명									
② 허 フ	ㅏ 번 호	③발굴기관								
④ 발 글	물지역	(좌표)								
⑤ 발 a	글 면 적	⑥보고서명								
⑦ 발 a	을 일 자	년	 월	Ó]					
⑧ 표 년										
9 보 관										
10 보 관										
	- ' ''			7.7	нпа					
					.본목록	I				
(I)	12	(B)		₩분류		⑤크기(cm)			16보고서	17
표본번 호	표본명	수량 (점)	시대	지층명	암석명	길이	폭	두께	도면번호, 사진번호	비고
		(10 /							717272	
	소계									
		위외	 } 같이	발굴 3	 포본을 경	 성히 보	 관합니	ㄴ 다.		
				년	월	Ç	일			
기관명 (인)										
문화재청장 귀하										
첨부서	류									
		상 화석표본	! 목록							
2. 표본 사진										

국가귀속대상 화석표본 목록

표본번호						수 량				
화 석 명 (학 명)		예) : 삼엽충(Yosimuraspis vulgaris Kobayashi, 1960)								
분	류	시 대			지층명			암석명		
규	격	길 이			폭			두께		
발 글		발굴장소								
	굴	발굴일자	년	윧	일 일					
		발 굴 자								
		발굴경위								
보관징	소									
보존처리										
현 	황									
특	징									
보관・	관리									
관청 지정										
의견	-									

(사진)